성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허가 요건의 세부사항 외의 허가 요건은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위해방지를 위한 규정 삭제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제6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.

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16. 10. 20 ~ 11. 09)

라.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.

마. 성별영향평가분석 : 해당사항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제6조(허가의 기준)에서 허가할 수 없는 경우를 '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'으로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, 조례에서는 위해방지를 위해 법령에 규정된 허가요건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후 그 외에 추가로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규제로 작용,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정비대상에 해당되어 안 제5조를 삭제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○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위해방지를 위한 사업 제한을 조례에서 중복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어 본 조례를 일부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